

『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조상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사회보장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소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, 소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제시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체계를 확

립하고자 합니다.

이에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와 서울시민복지기준,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을 상설소위원회로 규정하여 소위원회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 이유를 말씀드립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여 제8조제1항에 다음 각 호를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와 서울시민복지기준,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